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 명시, 가사휴직의 사유 확대 및 기간 규정 명확화(안 제48조제3항 본문 및 제5호, 안 제49조제3항제4호 단서 신설)
- 군인의 성 비위사건 징계시효 연장(3년→10년)(안 제60조의3제1항)
-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의 징수 위탁 근거 명확화(안 제53조의2제5항, 안 제62조제2항 및 제3항)

II. 검토의견

-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음(주서본 참조).
- 참고로 개정안은 성비위사건의 경우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¹⁾

1) 안 제60조의3제1항(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하고 개정 조문을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²⁾하고 있음.

법률 개정시 시행 유예기간을 둘지 여부는 준비기간 필요성 및 시행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인바, 징계시효의 연장과 같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국민이 법률 개정을 인지할 수 있도록 법률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에 여유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³⁾

현재 「국가공무원법⁴⁾」 및 「군무원인사법⁵⁾」은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어 징계시효의 균형을 맞추기

2. 징계사유가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2)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5호 및 제49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법률 개정의 취지나 내용에 따라서는 법률의 효력을 공포일부터 즉시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법률의 효력을 공포일부터 발생하도록 할 경우 국민은 법률의 시행에 따른 권리와 의무관계의 변화에 원만하게 대응할 수 없고, 법률의 집행기관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전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법률 시행에 상당한 혼란과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방식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또는 법률의 시행이 긴급하거나 단순한 정비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p822, 2024】**

4)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5) 「**군무원인사법**」 제41조(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사유가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위해서 「군인사법」도 서둘러 개정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소관
상임위 의결 내용을 존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전문위원 김 성 완)